**※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하며, ‘개념체계’는 그 추정, 판단 및 모형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한다. |
| ② |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요인이다. 재무정보의 보고에는 원가가 소요되고, 해당 정보 보고의 효익이 그 원가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
| ③ |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원가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재무자본유지개념은 특정한 측정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재무자본유지개념 하에서 측정기준의 선택은 기업이 유지하려는 재무자본의 유형과 관련이 있다. |
| ④ |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
| ⑤ |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

**2.**  ㈜대한의 20x1년도 현금흐름표상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은 ￦100,000이다. 다음에 제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대한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이자와 배당금 수취,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  |  |  |  |  |  |
| --- | --- | --- | --- | --- | --- |
| 감가상각비 | ￦2,000 |  |  | 미지급이자 감소 | ￦1,500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000 |  |  | 재고자산(순액) 증가 | 3,000 |
| 이자비용 | 5,000 |  |  | 매입채무 증가 | 4,000 |
| 법인세비용 | 4,000 |  |  | 매출채권(순액) 증가 | 2,500 |
| 재고자산평가손실 | 500 |  |  | 미수배당금 감소 | 1,000 |
| 배당금수익 | 1,500 |  |  | 미지급법인세 감소 | 2,000 |

|  |  |
| --- | --- |
| ① | ￦90,000 |
| ② | ￦96,500 |
| ③ | ￦97,000 |
| ④ | ￦97,500 |
| ⑤ | ￦99,000 |

**3.** ㈜대한은 20x1년 초 건물을 ￦1,000,000에 취득하여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하였다. 그러나 20x2년에 ㈜대한은 공정가치모형이 보다 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 건물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동 건물 이외의 투자부동산은 없으며, 원가모형 적용 시 20x1년 말 이익잉여금은 ￦300,000이었다. 건물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동 건물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이익잉여금 처분은 없다고 가정한다.

|  |  |  |
| --- | --- | --- |
| 구분 | 20x1년 말 | 20x2년 말 |
| 건물의 공정가치 | ￦950,000 | ￦880,000 |

|  |  |
| --- | --- |
| ① |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투자부동산 금액은 ￦880,000이다. |
| ② |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투자부동산평가손실 금액은 ￦70,000이다. |
| ③ | 20x2년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20x1년 말 재무상태표상 투자부동산 금액은 ￦950,000이다. |
| ④ | 20x2년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금액은 ￦100,000이다. |
| ⑤ | 20x2년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20x1년 말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 금액은 ￦350,000이다. |

**4.** ㈜대한은 20x1년 초에 기업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을 종업원에게 부여하였다. ㈜대한은 결제방식으로 가상주식 1,000주(주식 1,000주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 또는 주식 1,200주를 선택할 수 있고, 각 권리는 종업원이 2년 동안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종업원이 주식 1,200주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주식을 가득일 이후 2년 동안 보유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 ㈜대한은 부여일 이후 2년 동안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며, 부여일과 보고기간 말에 추정한 주식결제방식의 주당 공정가치와 주당 시가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구분 | 20x1년 초 | 20x1년 말 |
| 주식 1,200주 결제방식의 주당 공정가치 | ￦400 | ￦480 |
| 주당 시가 | ￦450 | ￦520 |

종업원 주식기준보상약정과 관련하여 (A)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대한에게 있는 경우와 (B)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대한에게 없는 경우, 20x1년도에 ㈜대한이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각각 얼마인가? 단,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한 종업원 모두가 20x2년 말까지 근무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이 예측은 실현되었다고 가정한다.

|  |  |  |  |
| --- | --- | --- | --- |
|  | (A) |  | (B) |
| ① | ￦225,000 |  | ￦240,000 |
| ② | ￦225,000 |  | ￦288,000 |
| ③ | ￦260,000 |  | ￦240,000 |
| ④ | ￦260,000 |  | ￦288,000 |
| ⑤ | ￦275,000 |  | ￦288,000 |

**5.**  ㈜대한이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20x1년 12월 31일 현재 창고에 보관중인 상품의 실사금액은 ￦2,000,00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1) | ㈜대한이 20x1년 12월 21일 ㈜서울로부터 선적지인도조건(F.O.B. shipping point)으로 매입한 원가 ￦250,000의 상품이 20x1년 12월 31일 현재 운송 중에 있다. 이 상품은 20x2년 1월 5일 도착예정이며, 매입 시 발생한 운임은 없다. |
| (2) | ㈜대한은 20x1년 10월 1일에 ㈜부산으로부터 원가 ￦150,000의 상품에 대해 판매를 수탁받았으며 이 중 원가 ￦40,000의 상품을 20x1년 11월 15일에 판매하였다. 나머지 상품은 20x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의 창고에 보관 중이며 기말 상품의 실사금액에 포함되었다. 수탁 시 발생한 운임은 없다. |
| (3) | ㈜대한은 20x1년 12월 19일에 ㈜대전에게 원가 ￦80,000의 상품을 ￦120,000에 판매 즉시 인도하고 2개월 후 ￦130,000에 재구매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
| (4) | 20x1년 11월 10일에 ㈜대한은 ㈜강릉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가 ￦500,000의 상품을 적송하였으며, ㈜강릉은 20x1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이 중 80%의 상품을 판매하였다. 적송 시 발생한 운임은 없다. |
| (5) | ㈜대한은 단위당 원가 ￦50,000의 신상품 10개를 20x1년 10월 15일에 ㈜광주에게 전달하고 20x2년 2월 15일까지 단위당 ￦80,000에 매입할 의사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은 ㈜광주로부터 6개의 상품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

위의 추가자료 내용을 반영한 이후 ㈜대한의 20x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말상품재고액은 얼마인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 및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고 가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2,330,000 | ② | ￦2,430,000 | ③ | ￦2,520,000 |
| ④ | ￦2,530,000 | ⑤ | ￦2,740,000 |  |  |

**6.**  유통업을 영위하는 ㈜대한의 20x1년도 기초 재고자산은 ￦855,000이며, 기초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0이다. 20x1년도 순매입액은 ￦7,500,000이다. ㈜대한의 20x1년도 기말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조 | 항목 | 장부  수량 | 실제  수량 | 단위당  원가 |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
| A | A1 | 120개 | 110개 | ￦800 | ￦700 |
| A2 | 200개 | 200개 | ￦1,000 | ￦950 |
| B | B1 | 300개 | 280개 | ￦900 | ￦800 |
| B2 | 350개 | 300개 | ￦1,050 | ￦1,150 |

㈜대한은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대한이 항목별기준 저가법과 조별기준 저가법을 각각 적용할 경우, ㈜대한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항목별기준 |  | 조별기준 |
| ① | ￦7,549,000 |  | ￦7,521,000 |
| ② | ￦7,549,000 |  | ￦7,500,000 |
| ③ | ￦7,519,000 |  | ￦7,500,000 |
| ④ | ￦7,519,000 |  | ￦7,498,000 |
| ⑤ | ￦7,500,000 |  | ￦7,498,000 |

**7.**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 1대를 ￦600,000에 취득하고 해당 기계장치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50,000이며 정액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대한은 동 기계장치에 대해 매년 말 감가상각 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동 기계장치의 20x1년 말 공정가치는 ￦510,000이며, 20x2년 말 공정가치는 ￦365,000이다. 동 기계장치와 관련한 ㈜대한의 20x1년도 및 20x2년도 자본의 연도별 증감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손상차손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여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 전부를 제거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20x1년 |  | 20x2년 |
| ① | ￦20,000 증가 |  | ￦20,000 감소 |
| ② | ￦20,000 증가 |  | ￦30,000 감소 |
| ③ | ￦90,000 증가 |  | ￦125,000 감소 |
| ④ | ￦90,000 감소 |  | ￦125,000 감소 |
| ⑤ | ￦90,000 감소 |  | ￦145,000 감소 |

**8.**㈜대한은 공장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청주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장건물 건설공사는 20x1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20x2년 6월 30일에 완료될 예정이다. 동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에 해당한다. ㈜대한은 공장건물 건설공사를 위해 20x1년 1월 1일에 ￦3,000,000, 20x1년 7월 1일에 ￦5,000,000, 20x1년 10월 1일에 ￦4,000,000을 각각 지출하였다. ㈜대한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차입금 | 차입금액 | 차입일 | 상환일 | 연 이자율 | 이자지급조건 |
| A | ￦4,000,000 | 20x1.1.1. | 20x2.9.30. | 8% | 단리  /매년말 지급 |
| B | ￦6,000,000 | 20x0.9.1. | 20x2.12.31. | 10% | 단리  /매년말 지급 |
| C | ￦8,000,000 | 20x1.4.1. | 20x3.6.30. | 6% | 단리  /매년말 지급 |

이들 차입금 중에서 차입금A는 동 공장건물의 건설공사를 위한 특정차입금이며, 차입금B와 차입금C는 일반차입금이다. 특정차입금 중 ￦1,000,000은 20x1년 1월 1일부터 20x1년 6월 30일까지 연 이자율 5%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였다. ㈜대한이 20x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단, 연평균지출액, 이자비용, 이자수익은 월할로 계산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320,000 | ② | ￦470,000 | ③ | ￦495,000 |
| ④ | ￦520,000 | ⑤ | ￦535,000 |  |  |

**9.**㈜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현금 ￦80,000을 지급하고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대한은 동 기계장치에 대해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0으로 추정하였으며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20x1년 말 동 기계장치에 자산손상 사유가 발생하여 ㈜대한은 자산손상을 인식하기로 하였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동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은 ￦50,000이다. ㈜대한은 20x2년 1월 1일 동 기계장치의 잔존 내용연수를 6년으로, 잔존가치를 ￦5,000으로 재추정하여 변경하였다. 20x2년 12월 31일 현재 동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은 ￦30,000이다. ㈜대한이 20x2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동 기계장치의 손상차손누계액으로 표시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대한은 동 기계장치에 대해 원가모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21,500 | ② | ￦25,000 | ③ | ￦26,500 |
| ④ | ￦28,500 | ⑤ | ￦30,000 |  |  |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 중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  |  |
| --- | --- |
| ① |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재료원가, 용역원가 |
| ② | 무형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
| ③ | 무형자산의 창출을 위하여 발생한 종업원급여 |
| ④ | 무형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 |
| ⑤ |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과 라이선스의 상각비 |

**11.**  ㈜대한의 20x1년 1월 1일 현재 자본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보통주-자본금 | ￦5,000,000 |
| (주당 액면금액 ￦5,000, 발행주식수 1,000주) |  |
|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 3,000,000 |
| 이익잉여금 | 1,500,000 |
| 자본총계 | ￦9,500,000 |
|  |  |

20x1년에 발생한 ㈜대한의 자기주식거래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20x1년 3월 1일 : | 자기주식 60주를 주당 ￦6,000에 취득하였다. |
| 5월 10일 : | 자기주식 20주를 주당 ￦7,500에 처분하였다. |
| 7월 25일 : | 자기주식 10주를 주당 ￦5,000에 처분하였다. |
| 9월 15일 : | 자기주식 20주를 주당 ￦4,500에 처분하였다. |
| 10월 30일 : | 자기주식 10주를 소각하였다. |
| 11월 20일 : | 대주주로부터 보통주 20주를 무상으로 증여 |
|  | 받았으며, 수증 시 시가는 주당 ￦8,000이었다. |
|  |  |

㈜대한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300,000이다. ㈜대한은 선입선출법에 따른 원가법을 적용하여 자기주식거래를 회계처리한다. ㈜대한의 20x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총계는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9,710,000 | ② | ￦9,730,000 | ③ | ￦9,740,000 |
| ④ | ￦9,820,000 | ⑤ | ￦9,850,000 |  |  |

**12.**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민국의 사채를 발행가액으로 취득하였으며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지 않음). ㈜대한은 사업모형 및 사채의 현금흐름 특성을 고려하여 취득한 사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  |
| --- |
|  사채발행일 : 20x1년 1월 1일   만기일 : 20x3년 12월 31일(일시상환)   액면금액 : ￦1,000,000   이자지급 : 매년 12월 31일에 연 7% 지급   사채발행시점의 유효이자율 : 연 10% |

20x3년 1월 1일에 ㈜대한과 ㈜민국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재협상하여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하였으며, 20x3년 1월 1일의 현행이자율은 연 13%이다. ㈜대한은 재협상을 통한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이 금융자산의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
| --- |
|  만기일 : 20x5년 12월 31일로 연장(일시상환)   이자지급 : 20x3년부터 매년 12월 31일에 연 5% 지급 |

㈜대한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과 관련하여 인식할 변경손익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  |  |  |  |
| --- | --- | --- | --- | --- |
|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10% | 13% | 10% | 13% |
| 1년 | 0.9091 | 0.8850 | 0.9091 | 0.8850 |
| 2년 | 0.8264 | 0.7831 | 1.7355 | 1.6681 |
| 3년 | 0.7513 | 0.6931 | 2.4868 | 2.3612 |

|  |  |  |  |  |  |
| --- | --- | --- | --- | --- | --- |
| ① | ￦0 | ② | ￦97,065 이익 | ③ | ￦97,065 손실 |
| ④ | ￦161,545 이익 | ⑤ | ￦161,545 손실 |  |  |

**13.**  ㈜대한은 ㈜민국이 발행한 사채(발행일 20x1년 1월 1일, 액면금액 ￦3,000,000으로 매년 12월 31일에 연 8% 이자지급, 20x4년 12월 31일에 일시상환)를 20x1년 1월 1일에 사채의 발행가액으로 취득하였다(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지 않음). ㈜대한은 취득한 사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사채발행시점의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대한은 ㈜민국으로부터 20x1년도 이자 ￦240,000은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20x1년 말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대한은 채무불이행확률을 고려하여 20x2년부터 20x4년까지 다음과 같은 현금흐름을 추정하였다.

|  |
| --- |
|  매년 말 수취할 이자 : ￦150,000   만기에 수취할 원금 : ￦2,000,000 |

또한 ㈜대한은 ㈜민국으로부터 20x2년도 이자 ￦150,000을 수취하였으며, 20x2년 말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확률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20x3년부터 20x4년까지 다음과 같은 현금흐름을 추정하였다.

|  |
| --- |
|  매년 말 수취할 이자 : ￦210,000   만기에 수취할 원금 : ￦2,000,000 |

㈜대한이 20x2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  |  |  |  |
| --- | --- | --- | --- | --- |
|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8% | 10% | 8% | 10% |
| 1년 | 0.9259 | 0.9091 | 0.9259 | 0.9091 |
| 2년 | 0.8573 | 0.8264 | 1.7832 | 1.7355 |
| 3년 | 0.7938 | 0.7513 | 2.5770 | 2.4868 |
| 4년 | 0.7350 | 0.6830 | 3.3120 | 3.1698 |

|  |  |  |  |  |  |
| --- | --- | --- | --- | --- | --- |
| ① | ￦0 | ② | ￦104,073 | ③ | ￦141,635 |
| ④ | ￦187,562 | ⑤ | ￦975,107 |  |  |

**1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중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의 재분류 및 금융자산의 제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
| --- | --- |
| ① |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부터 상각후원가로 측정했었던 것처럼 재분류일에 금융자산을 측정한다. |
| ② | 양도자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용손실의 보상을 양수자에게 보증하면서 단기 수취채권을 매도한 것은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의 예이다. |
| ③ |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
| ④ |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을 재매입시점의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의 예이다. |
| ⑤ | 양도자가 매도 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또는 매도가격에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양도자산을 재매입하는 거래는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의 예이다. |

**15.**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상환할증금 미지급조건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  |
| --- |
|   사채의 액면금액은 ￦1,000,000이고 만기는 20x3년 12월 31일이다.    액면금액에 대하여 연 10%의 이자를 매년 말에 지급한다.  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기일 30일 전까지이다.    행사비율은 사채액면금액의 100%로 행사금액은 ￦20,000(사채액면금액 ￦20,000당 보통주 1주(주당 액면금액 ￦5,000)를 인수)이다.    원금상환방법은 만기에 액면금액의 100%를 상환한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점에 일반사채의 시장수익률은 연 12%이다. |

㈜대한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인식한 자본요소(신주인수권대가) 중 행사된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20x3년 1월 1일에 ㈜대한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금액 중 40%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  |  |  |  |
| --- | --- | --- | --- | --- |
|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10% | 12% | 10% | 12% |
| 1년 | 0.9091 | 0.8929 | 0.9091 | 0.8929 |
| 2년 | 0.8264 | 0.7972 | 1.7355 | 1.6901 |
| 3년 | 0.7513 | 0.7118 | 2.4868 | 2.4019 |

|  |  |
| --- | --- |
| ① | 20x1년 1월 1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점의 자본요소(신주인수권대가)는 ￦951,990이다. |
| ② |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114,239이다. |
| ③ |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장부금액은 ￦966,229이다. |
| ④ | 20x3년 1월 1일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증가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319,204이다. |
| ⑤ | 20x3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70,694이다. |

**1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
| ② |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익을 미리 받은 경우, 이로 인한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당해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과세되지 않을 수익을 차감한 금액이다. |
| ③ |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관련된 일시적차이의 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세율이나 세법의 변경, 예상되는 자산의 회수 방식 변경,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재검토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
| ④ | 과세대상수익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 |
| ⑤ | 당기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토지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토지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며, 이로 인한 이연법인세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17.**  20x1년 1월 1일에 설립된 ㈜대한은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계산 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7%로 변동이 없다.

|  |
| --- |
| <20x1년>    20x1년 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1,000,000이다.    20x1년 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1,200,000이다. |
| <20x2년>    20x2년도 당기근무원가는 ￦300,000이다.    20x2년 말에 일부 종업원의 퇴직으로 ￦150,000을 사외적립자산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20x2년 말에 ￦200,000을 현금으로 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하였다.    20x2년 말 확정급여채무에서 발생한 재측정요소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 보험수리적손실 466,000 (대변) 확정급여채무 466,000 |

㈜대한의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순확정급여부채가 ￦400,000인 경우, (A)20x2년 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금액과 (B)확정급여제도 적용이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A) |  | (B) |
| ① | ￦568,000 |  | ￦286,000 감소 |
| ② | ￦568,000 |  | ￦314,000 감소 |
| ③ | ￦1,416,000 |  | ￦286,000 감소 |
| ④ | ￦1,500,000 |  | ￦286,000 감소 |
| ⑤ | ￦1,500,000 |  | ￦314,000 감소 |

**18.**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기본주당이익 정보의 목적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지배기업의 보통주 1주당 지분의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
| ② | 기업이 공개매수 방식으로 우선주를 재매입할 때 우선주의 장부금액이 우선주의 매입을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계산할 때 차감한다. |
| ③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산정하기 위한 보통주유통일수 계산의 기산일은 통상 주식발행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이다. 채무상품의 전환으로 인하여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최종이자발생일의 다음날이 보통주유통일수를 계산하는 기산일이다. |
| ④ | 조건부로 재매입할 수 있는 보통주를 발행한 경우 이에 대한 재매입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는 보통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⑤ | 잠재적보통주는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경우 주당계속영업이익을 감소시키거나 주당계속영업손실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 취급한다. |

**19.**㈜대한은 20x1년 1월 1일 만기가 2년을 초과하는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이는 회사의 유일한 사채이다. 동 사채는 액면이자를 매년 12월 31일에 지급하며, 액면금액을 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 사채 발행 이후 발행조건의 변경은 없다. 동 사채에 대한 20x1년도와 20x2년도의 관련 이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구분 | 20x1년도 | 20x2년도 |
| 연도말 액면이자 지급액 | ￦120,000 | ￦120,000 |
| 포괄손익계산서상  연간 이자비용 | ￦148,420 | ￦152,400 |

상기 사채의 발행시점의 유효이자율은 얼마인가? 단, 사채발행비와 조기상환, 차입원가 자본화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14% | ② | 15% | ③ | 16% |
| ④ | 17% | ⑤ | 18% |  |  |

**20.**다음은 ㈜대한과 관련하여 20x1년에 발생한 사건이다.

|  |  |
| --- | --- |
| 가. | ㈜대한은 20x1년부터 해저유전을 운영한다. 관련 라이선싱 약정에 따르면, 석유 생산 종료시점에는 유정 굴착장치를 제거하고 해저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최종 원상 복구원가의 90%는 유정 굴착장치 제거와 그 장치의 건설로 말미암은 해저 손상의 원상 복구와 관련이 있다. 나머지 10%의 원상 복구원가는 석유의 채굴로 생긴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굴착장치는 건설되었으나 석유는 채굴되지 않은 상태이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유정 굴착장치 제거와 그 장치의 건설로 말미암은 손상의 원상 복구에 관련된 원가(최종 원가의 90%)의 최선의 추정치는 ￦90,000이며, 석유 채굴로 생기는 나머지 10%의 원가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10,000이다. |
| 나. | 20x1년 8월 A씨의 결혼식이 끝나고 10명이 식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유족들은 ㈜대한이 판매한 제품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손해배상금 ￦50,000). ㈜대한은 그 책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회사의 자문 법무법인은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차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까지는 ㈜대한에 책임이 있는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였다. |

상기 사건들에 대하여, 20x1년 말 ㈜대한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충당부채는 얼마인가? 단, 기초잔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150,000 | ② | ￦140,000 | ③ | ￦100,000 |
| ④ | ￦90,000 | ⑤ | ￦0 |  |  |

**21.**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
| --- | --- |
| ① |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에는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는 재화나 용역을 분명히 기재한다. 따라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나 용역에만 한정된다. |
| ②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은 아니지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행해야 한다면, 그 활동은 수행의무에 포함된다. |
| ③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그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변동대가 추정치 중 제약받는 금액을 포함)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 ④ |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도 포함한다. |
| ⑤ | 거래가격의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따라서 계약을 개시한 후의 개별 판매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다시 배분하지는 않는다. |

**22.**㈜대한은 ㈜민국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건설하기로 ㈜민국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내용 및 추가정보는 다음과 같다.

|  |
| --- |
|   ㈜민국은 계약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한이 토지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  해당 토지에 ㈜대한의 접근이 지연된다면(불가항력적인 사유 포함), 지연의 직접적인 결과로 들인 실제원가에 상당하는 보상을 ㈜대한이 받을 권리가 있다.    계약 개시 후에 생긴 그 지역의 폭풍 피해 때문에 ㈜대한은 계약 개시 후 120일이 지나도록 해당 토지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  ㈜대한은 청구의 법적 기준을 검토하고, 관련 계약 조건을 기초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대한은 계약변경에 따라 ㈜민국에게 재화나 용역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고 계약변경 후에도 나머지 재화와 용역 모두는 구별되지 않으며 단일 수행의무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한은 계약 조건에 따라 지연의 결과로 들인 특정 직접원가를 제시할 수 있으며,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  ㈜민국은 ㈜대한의 청구에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

계약변경과 관련하여 상기 거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계약변경은 서면이나 구두 합의, 또는 기업의 사업 관행에서 암묵적으로 승인될 수 있다. |
| ② | ㈜대한과 ㈜민국이 계약변경 범위에 다툼이 있더라도, 계약변경은 존재할 수 있다. |
| ③ | ㈜대한과 ㈜민국이 계약 범위의 변경을 승인하였지만 아직 이에 상응하는 가격 변경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변경은 존재할 수 없다. |
| ④ | ㈜대한과 ㈜민국은 계약변경으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권리와 의무를 집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 조건과 그 밖의 증거를 포함하여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한다. |
| ⑤ | ㈜대한은 계약변경에 대해 거래가격과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새로 수정하여 그 계약변경은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회계처리한다. |

**23.**다음은 ㈜대한의 20x1년과 20x2년의 수취채권, 계약자산, 계약부채에 대한 거래이다.

|  |
| --- |
|   ㈜대한은 고객에게 제품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제품을 고객에게 이전할 때 각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한다.    ㈜대한은 20x2년 1월 31일에 ㈜민국에게 제품A를 이전하는 취소 불가능 계약을 20x1년 10월 1일에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라 ㈜민국은 20x1년 11월 30일에 대가 ￦1,000 전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나 ￦300만 지급하였고, 20x2년 1월 15일에 잔액 ￦700을 지급하였다. ㈜대한은 20x2년 1월 31일에 제품A를 ㈜민국에게 이전하였다.    ㈜대한은 ㈜만세에게 제품B와 제품C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1,000을 받기로 20x1년 10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서는 제품B를 먼저 인도하도록 요구하고, 제품B의 인도 대가는 제품C의 인도를 조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한은 제품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제품B에 대한 수행의무에 ￦400을, 제품C에 대한 수행의무에 ￦600을 배분한다. ㈜대한은 ㈜만세에게 20x1년 11월 30일에 제품B를, 20x2년 1월 31일에 제품C를 각각 이전하였다. |

상기 거래에 대하여, 20x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의 수취채권, 계약자산, 계약부채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기초잔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수취채권 |  | 계약자산 |  | 계약부채 |
| ① | ￦0 |  | ￦400 |  | ￦0 |
| ② | ￦400 |  | ￦0 |  | ￦0 |
| ③ | ￦700 |  | ￦400 |  | ￦1,000 |
| ④ | ￦1,000 |  | ￦400 |  | ￦1,000 |
| ⑤ | ￦1,100 |  | ￦0 |  | ￦1,000 |

**24.**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
| --- | --- |
| ① | 리스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
| ② |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이용하는 리스이용자는 해당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
| ③ | 리스이용자의 규모, 특성,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소액인지는 상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④ | 단기리스에 대한 리스회계처리 선택은 리스별로 적용해야 한다. |
| ⑤ |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회계처리 선택은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적용해야 한다. |

**25.**㈜대한리스는 20x1년 1월 1일 ㈜민국과 다음과 같은 금융리스계약을 약정과 동시에 체결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리스개시일 : 20x1년 1월 1일    리스기간 : 20x1년 1월 1일 ∼ 20x3년 12월 31일(3년)    연간 정기리스료 : 매년 말 ￦500,000 후급    리스자산의 공정가치는 ￦1,288,530이고 내용연수는 4년이다.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잔존가치는 없으며, ㈜민국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  ㈜민국은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100,000에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하다. 동 금액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리스기간 종료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이다.    ㈜대한리스와 ㈜민국이 부담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각각 ￦30,000과 ￦20,000이다.    ㈜대한리스는 상기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민국은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연 10%이며, 그 현가계수는 아래 표와 같다.   |  |  |  | | --- | --- | --- |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3년 | 0.7513 | 2.4868 | | 4년 | 0.6830 | 3.1698 | |

  상기 리스거래가 ㈜대한리스와 ㈜민국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  |  |  |
| --- | --- | --- | --- |
|  | ㈜대한리스 |  | ㈜민국 |
| ① | ￦131,853 증가 |  | ￦466,486 감소 |
| ② | ￦131,853 증가 |  | ￦481,486 감소 |
| ③ | ￦131,853 증가 |  | ￦578,030 감소 |
| ④ | ￦134,853 증가 |  | ￦466,486 감소 |
| ⑤ | ￦134,853 증가 |  | ￦481,486 감소 |

**26.**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사업이라 함은 투입물, 산출물 및 산출물을 창출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이 세 가지 요소 모두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통합된 집합에 반드시 필요하다. |
| ② | 공동약정 자체의 재무제표에서 공동약정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을 적용하지 않는다. |
| ③ |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을 적용하지 않는다. |
| ④ | 일반적으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라 함은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여,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인 종료일이다. |
| ⑤ |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대가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사업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

**27.**㈜대한은 20x1년 7월 1일 ㈜민국의 A부문을 ￦450,000에 인수하였다. 다음은 20x1년 7월 1일 현재 ㈜민국의 A부문 현황이다. A부문에 귀속되는 부채는 없다.

|  |  |  |  |  |  |  |
| --- | --- | --- | --- | --- | --- | --- |
| A부문 | | | | | | |
| ㈜민국 | 20x1년 7월 1일 현재 | | | | | (단위 : ￦) |
| 계정과목 | |  | 장부금액 |  | 공정가치 | |
| 토 지 | |  | 200,000 |  | 220,000 | |
| 건 물 | |  | 150,000 |  | 200,000 | |
| 기 계 장 치 | |  | 50,000 |  | 80,000 | |
|  | |  | 400,000 |  |  | |

공정가치는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지 않았다. 20x1년 7월 1일 현재 건물과 기계장치의 잔존 내용연수는 각각 10년과 5년이며 모두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x1년 말까지 ㈜대한은 동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손상징후는 없다. 취득일 현재 ㈜민국의 A부문에 표시된 자산 외에 추가적으로 식별가능한 자산은 없으며 20x1년 말까지 다른 거래는 없다.

㈜민국의 A부문이 (가)별도의 사업을 구성하고 ㈜대한이 지배력을 획득하여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하는 상황과 (나)별도의 사업을 구성하지 못하여 ㈜대한이 자산 집단을 구성하는 각 자산의 취득원가를 결정하기 위한 회계처리를 하는 상황으로 나눈다. 각 상황이 20x1년 7월 1일부터 20x1년 12월 31일까지 ㈜대한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가) |  | (나) |
| ① | ￦32,000 증가 |  | ￦16,200 감소 |
| ② | ￦32,000 감소 |  | ￦16,200 감소 |
| ③ | ￦18,000 감소 |  | ￦32,400 감소 |
| ④ | ￦18,000 증가 |  | ￦32,400 증가 |
| ⑤ | ￦18,000 감소 |  | ￦32,400 증가 |

**28.**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
| ② |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기업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므로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없다. |
| ③ |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참여자로서 투자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제표는 별도재무제표가 아니다. |
| ④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의 측정은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을 적용하지 않는다. |
| 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이 면제되는 경우, 그 기업의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만을 재무제표로 작성할 수 있다. |

**※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9번과 30번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한은 20x1년 초에 ㈜민국의 보통주 30%를 ￦350,000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20x1년 초 현재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동일하게 ￦1,200,000이다.  <추가자료>    다음은 ㈜대한과 ㈜민국 간의 20x1년 재고자산 내부거래 내역이다.   |  |  |  |  | | --- | --- | --- | --- | | 판매회사 → 매입회사 | 판매회사  매출액 | 판매회사  매출원가 | 매입회사 장부상 기말재고 | | ㈜대한 → ㈜민국 | ￦25,000 | ￦20,000 | ￦17,500 |     20x2년 3월 31일 ㈜민국은 주주에게 현금배당금 ￦10,000을 지급하였다.    20x2년 중 ㈜민국은 20x1년 ㈜대한으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을 외부에 모두 판매하였다.    다음은 ㈜민국의 20x1년도 및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 내용의 일부이다.   |  |  |  | | --- | --- | --- | | 구분 | 20x1년 | 20x2년 | | 당기순이익 | ￦100,000 | ￦(-)100,000 | | 기타포괄이익 | ￦50,000 | ￦110,000 | |

**29.**20x1년 말 현재 ㈜대한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민국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기말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403,950 | ② | ￦400,000 | ③ | ￦395,000 |
| ④ | ￦393,950 | ⑤ | ￦350,000 |  |  |

**30.**지분법 적용이 ㈜대한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18,950 감소 | ② | ￦28,950 감소 | ③ | ￦33,950 증가 |
| ④ | ￦38,950 증가 | ⑤ | ￦38,950 감소 |  |  |

**※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1번과 32번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한은 20x1년 초에 ㈜민국의 보통주 80%를 ￦1,20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지배력 획득시점의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다음은 지배력 획득일 현재 ㈜민국의 자본 내역이다.   |  |  |  | | --- | --- | --- | | ㈜민국 |  | 20x1년 1월 1일 | | 보통주자본금(주당 액면금액 ￦100) |  | ￦500,000 | | 자본잉여금 |  | 200,000 | | 이익잉여금 |  | 800,000 | |  |  | ￦1,500,000 |   <추가자료>    20x1년과 20x2년 ㈜대한과 ㈜민국 간의 재고자산 내부거래는 다음과 같다. 매입회사 장부상 남아있는 각 연도말 재고자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모두 외부에 판매되었다.   |  |  |  |  |  | | --- | --- | --- | --- | --- | | 연도 | 판매회사 → 매입회사 | 판매회사  매출액 | 판매회사  매출원가 | 매입회사장부상 기말재고 | | 20x1 | ㈜대한 → ㈜민국 | ￦80,000 | ￦64,000 | ￦40,000 | | 20x1 | ㈜민국 → ㈜대한 | ￦50,000 | ￦40,000 | ￦15,000 | | 20x2 | ㈜대한 → ㈜민국 | ￦100,000 | ￦70,000 | ￦40,000 | | 20x2 | ㈜민국 → ㈜대한 | ￦80,000 | ￦60,000 | ￦20,000 |     ㈜대한은 20x1년 4월 1일에 보유 토지 ￦90,000을 ㈜민국에게 ￦110,000에 매각하였다. ㈜대한과 ㈜민국은 20x2년 12월 말부터 보유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민국은 ㈜대한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120,000으로 재평가하였다.    ㈜대한의 20x1년과 20x2년 당기순이익은 각각 ￦300,000과 ￦200,000이며, ㈜민국의 20x1년과 20x2년 당기순이익은 각각 ￦80,000과 ￦100,000이다.    ㈜대한의 별도재무제표상 ㈜민국의 주식은 원가법으로 표시되어 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

**31.**20x1년 말 ㈜대한의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비지배지분은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300,000 | ② | ￦313,800 | ③ | ￦315,400 |
| ④ | ￦316,000 | ⑤ | ￦319,800 |  |  |

**32.**㈜대한의 20x2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지배기업소유주귀속당기순이익과 비지배지분귀속당기순이익은 각각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지배기업소유주귀속  당기순이익 |  | 비지배지분귀속  당기순이익 |
| ① | ￦264,400 |  | ￦18,400 |
| ② | ￦264,400 |  | ￦19,000 |
| ③ | ￦264,400 |  | ￦19,600 |
| ④ | ￦274,400 |  | ￦19,600 |
| ⑤ | ￦274,400 |  | ￦21,600 |

**33.**㈜대한은 20x1년 1월 1일 ㈜민국의 보통주 80%를 ￦45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동일자에 ㈜민국은 ㈜만세의 주식 60%를 ￦20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지배력 획득시점에 ㈜민국과 ㈜만세의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은 동일하다. 다음은 지배력 획득시점 이후 20x1년 말까지 회사별 순자산 변동내역이다.

|  |  |  |  |
| --- | --- | --- | --- |
| 구분 | ㈜대한 | ㈜민국 | ㈜만세 |
| 20x1. 1. 1. | ￦800,000 | ￦420,000 | ￦300,000 |
| 별도(개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 100,000 | 80,000 | 50,000 |
| 20x1. 12. 31. | ￦900,000 | ￦500,000 | ￦350,000 |

20x1년 7월 1일 ㈜대한은 ㈜민국에게 장부금액 ￦150,000인 기계장치를 ￦170,000에 매각하였다. 매각시점에 기계장치의 잔존 내용연수는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잔존가치는 없다. 20x1년 중 ㈜민국이 ㈜만세에게 판매한 재고자산 매출액은 ￦100,000(매출총이익률은 30%)이다. 20x1년 말 현재 ㈜만세는 ㈜민국으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 중 40%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과 ㈜민국은 종속회사 투자주식을 별도재무제표상 원가법으로 표시하고 있다. ㈜대한의 20x1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비지배지분귀속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19,600 | ② | ￦20,000 | ③ | ￦38,600 |
| ④ | ￦39,600 | ⑤ | ￦49,600 |  |  |

**34.**㈜대한(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원화(￦))은 20x1년 1월 1일에 일본소재 기업인 ㈜동경(기능통화는 엔화(¥))의 보통주 80%를 ¥8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지배력 획득일 현재 ㈜동경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90,000으로 동일하다. ㈜동경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10,000이며 수익과 비용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였다. 20x1년 말 ㈜동경의 재무제표를 표시통화인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대변에 발생한 외환차이는 ￦19,000이다. ㈜동경은 종속회사가 없으며, 20x1년의 환율정보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환율 : ￦/¥) | | | | |
| 20x1년 1월 1일 |  | 20x1년 12월 31일 |  | 20x1년 평균 |
| 10.0 |  | 10.2 |  | 10.1 |

㈜대한은 ㈜동경 이외의 종속회사는 없으며 지배력 획득일 이후 ㈜대한과 ㈜동경 간의 내부거래는 없다.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니며, 위 기간에 환율의 유의한 변동은 없었다. 20x1년 말 ㈜대한의 연결재무상태표상 영업권 금액과 비지배지분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  |  |  |  |
| --- | --- | --- | --- |
|  | 영업권 |  | 비지배지분 |
| ① | ￦80,000 |  | ￦190,000 |
| ② | ￦80,800 |  | ￦204,000 |
| ③ | ￦81,600 |  | ￦204,000 |
| ④ | ￦81,600 |  | ￦206,000 |
| ⑤ | ￦82,000 |  | ￦206,000 |

**35.**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인식되지 않은 확정계약, 예상거래나 해외사업장순투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이 중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예상거래(또는 예상거래의 구성요소)인 경우 그 거래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 |
| ② | 사업결합에서 사업을 취득하기로 하는 확정계약은 외화위험을 제외하고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은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
| ③ |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에 대한 회계처리 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것으로 결정된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 ④ | 현금흐름위험회피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별도의 자본요소(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는 (가)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수단의 손익누계액과 (나)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현재가치) 변동 누계액 중 적은 금액(절대금액 기준)으로 조정한다. |
| ⑤ | 외화위험회피의 경우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의 외화위험 부분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상품의 투자는 제외한다. |

**36.**「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용역 잠재력이 취득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② |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부채의 가액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
| ③ | 투자목적의 장기투자증권 또는 단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표시한다. |
| ④ |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
| ⑤ | 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도 명목가액으로 평가한다. |

**37.**「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평가하며,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이 경우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② |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재료 외의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 데 드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한다. |
| ③ |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하되 재정운영순원가, 비교환수익 등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재정운영결과는 각 중앙관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 ④ |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변동효과는 외화평가손실 또는 외화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
| ⑤ |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약정 등에 따른 피보증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

**38.**「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국가의 우발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국가회계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을 말하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주석에 공시한다. |
| ② | 국가의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표시한다. |
| ③ | 국가의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
| ④ | 지방자치단체의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
| ⑤ | 지방자치단체의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39.**「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미수세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미수세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
| ② | 「지방회계법」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 ③ | 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생긴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서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
| ④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의하며,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
| 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고, 공무원의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

**40.**다음은 중앙관서 A부처의 20x1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수집한 회계자료이다.

|  |
| --- |
|   기초순자산은 ￦10,000(기본순자산 ￦2,000, 적립금 및 잉여금 ￦7,000, 순자산조정 ￦1,000)이다.    프로그램총원가 ￦35,000과 프로그램수익 ￦15,000이 발생하였다.    행정운영을 위해 발생한 인건비 ￦7,000과 경비 ￦3,000은 모두 관리운영비로 인식한다.    제재금수익은 ￦3,000, 국고수입은 ￦14,000, 비배분수익은 ￦8,000, 부담금수익은 ￦9,000이다.    비배분비용은 ￦6,000, 국고이전지출은 ￦2,000이다.  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은 ￦4,000이며 이것은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다. |

A부처는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었고, 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상계할 내부거래는 없으며, 상기 제시된 자료 이외의 항목은 없다고 가정한다. A부처의 20x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A부처의 재정운영표에 표시되는 재정운영순원가는 ￦28,000이다. |
| ② | A부처의 재정운영표에 표시되는 재정운영결과는 ￦28,000이다. |
| ③ | A부처의 순자산변동표에서 재원의 조달 및 이전란에 표시되는 금액은 ￦24,000이다. |
| ④ | A부처의 순자산변동표상 기말 적립금 및 잉여금은 ￦3,000이다. |
| ⑤ | A부처의 순자산변동표상 기말순자산은 ￦58,000이다. |

**41.**㈜대한은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은 기본원가(prime costs)이다. 20x1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기본원가의 40%이었다. 20x1년도 생산 및 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초재고자산 중 재공품 및 제품의 작업별 원가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항목 | 기초재공품 | | 기초제품 | | 작업#102 | 작업#103 | 작업#101 | | 기본원가 | ￦4,000 | ￦3,500 | ￦5,000 | | 제조간접원가 | 2,000 | 1,750 | 2,500 | | 합계 | ￦6,000 | ￦5,250 | ￦7,500 |   (2)  당기에 작업 #102와 #103에 소비된 기본원가는 각각 ￦1,500과 ￦1,000이었다.  (3)  당기에 신규로 착수된 작업은 없었고, 작업 #102와 #103은 완성되었다.  (4)  당기에 작업 #101과 #102는 각각 ￦8,300과 ￦10,000에 판매되었다.  (5)  당기에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1,250이었다.  (6)  ㈜대한은 배부차이를 원가요소기준비례배부법으로 조정한다. |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2,210 | ② | ￦2,320 | ③ | ￦2,440 |
| ④ | ￦2,520 | ⑤ | ￦2,550 |  |  |

**42.**㈜대한은 결합공정과 추가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며, 분리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한다. 20x1년의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1) 제1공정  제1공정에서는 원재료를 투입하여 제품A 100단위와 제품B 300단위를 생산하였으며, 결합원가는 총 ￦40,000이었다. 제품A는 단위당 ￦200에 판매되고, 제품B는 제2공정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제품C로 판매된다.  (2) 제2공정  당기에 제1공정으로부터 대체된 제품B는 제품C 280단위로 생산되었으며, 추가가공원가는 총 ￦12,400이었다. 제품C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50이다. 제품B를 제품C로 추가 가공하는 과정에서 부산물 20단위가 생산되었다. 부산물은 단위당 ￦20에 즉시 판매할 수 있다. 부산물은 생산시점에 순실현가능가치로 인식한다. |

제품C의 총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단, 각 공정의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35,600 | ② | ￦36,000 | ③ | ￦36,400 |
| ④ | ￦36,700 | ⑤ | ￦37,000 |  |  |

**43.**㈜대한은 20x1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단일제품을 생산한다. 20x1년과 20x2년에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활동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항목 | 20x1년 | 20x2년 |
| 생산량 | 100단위 | 120단위 |
| 판매량 | 80단위 | 110단위 |
| 매출액 | ￦24,000 | ￦33,000 |
| 매출원가 | 17,600 | 22,400 |
| 매출총이익 | ￦6,400 | ￦10,600 |
| 판매관리비 | 5,600 | 6,200 |
| 영업이익 | ￦800 | ￦4,400 |

㈜대한은 재공품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원가흐름 가정은 선입선출법이다. 20x2년도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단, 두 기간의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고정판매관리비는 동일하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3,200 | ② | ￦3,400 | ③ | ￦3,600 |
| ④ | ￦3,800 | ⑤ | ￦4,200 |  |  |

**44.**㈜대한은 표준종합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정상공손이 반영되기 전의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항목 |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 |
| 직접재료원가 | ￦20 |
| 전환원가 | 30 |
| 합계 | ￦50 |

직접재료는 공정초에 모두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평균적으로 발생한다. 당기의 생산활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항목 | 물량 | 전환원가 완성도 |
| 기초재공품 | 300단위 | 50% |
| 기말재공품 | 500 | 80% |
| 완성품 | 2,000 |  |
| 공손품 | 100 |

㈜대한은 공정의 60% 시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며, 당기에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2%를 정상공손으로 허용한다. 정상공손원가는 합격품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공손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정상공손원가 배부 후 표준원가로 기록된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단, 전기와 당기의 단위당 표준원가는 동일하고, 공손품은 전량 폐기된다.

|  |  |  |  |
| --- | --- | --- | --- |
|  | 완성품원가 |  | 기말재공품원가 |
| ① | ￦101,000 |  | ￦21,380 |
| ② | ￦101,000 |  | ￦22,000 |
| ③ | ￦101,520 |  | ￦21,380 |
| ④ | ￦101,520 |  | ￦22,000 |
| ⑤ | ￦101,520 |  | ￦22,380 |

**45.**표준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대한은 보급형 스키를 뱃치(batch) 단위로 생산한다. 제품 1뱃치를 생산할 때마다 새로운 작업준비를 해야 한다. 변동작업준비원가는 모두 작업준비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이며, 원가동인은 작업준비시간이다. 20x1년 초에 설정한 연간 예산자료와 20x1년 말에 수집한 실제결과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항목 | 예산자료 | 실제결과 |
| 생산 및 판매량 | 10,000단위 | 11,000단위 |
| 뱃치크기(뱃치당 제품수량) | 200단위 | 200단위 |
| 뱃치당 작업준비시간 | 1시간 | 0.8시간 |
| 변동작업준비원가 총액 | ￦1,500 | ￦1,100 |

20x1년도 변동작업준비원가에 대한 소비차이(spending variance)와 능률차이(efficiency variance)는 각각 얼마만큼 유리 또는 불리한가?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다.

|  |  |  |  |
| --- | --- | --- | --- |
|  | 소비차이 |  | 능률차이 |
| ① | ￦220 유리 |  | ￦330 유리 |
| ② | ￦220 유리 |  | ￦330 불리 |
| ③ | ￦330 불리 |  | ￦220 유리 |
| ④ | ￦330 유리 |  | ￦220 유리 |
| ⑤ | ￦0 |  | ￦550 불리 |

**46.**㈜대한은 제품A를 생산하며, 연간 최대생산능력은 10,000단위이다. ㈜대한은 20x1년 초에 제품A의 예상수요량인 9,500단위를 생산·판매하기로 하고 종합예산을 편성하였다. 제품A의 단위당 판매가격과 원가 예산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항목 | 단위당 금액 |
| 판매가격 | ￦40 |
| 직접재료원가 | 12 |
| 직접노무원가 | 5 |
| 제조간접원가 | 8 |
| 변동판매비 | 2 |

단위당 제조간접원가에는 단위당 변동원가 ￦5와 단위당 고정원가 ￦3(10,000단위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예산편성 직후에 ㈜대한은 ㈜민국으로부터 제품A 1,000단위를 단위당 ￦30에 공급해 달라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민국의 특별주문량 1,000단위는 전량 수락하거나 거절해야 한다. ㈜대한이 ㈜민국에 제품A를 판매할 경우에는 단위당 변동판매비의 50%를 절감할 수 있다. 한편, ㈜대한은 ㈜만세로부터 제품A와 동일한 제품을 단위당 ￦25에 필요한 만큼 공급받을 수 있다. ㈜대한이 ㈜민국의 주문을 수락하면 ㈜대한의 예산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 단, ㈜대한은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4,000 감소 | ② | ￦4,000 증가 | ③ | ￦5,500 감소 |
| ④ | ￦5,500 증가 | ⑤ | ￦6,000 증가 |  |  |

**※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47번과 48번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한은 사업부 A와 B로 구성되어 있고, 각 사업부는 이익중심점으로 운영된다. 사업부A는 동일한 기계를 이용하여 성능이 다른 두 종류의 제품 X와 Y를 생산하며, 각 제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항목 | 제품X | 제품Y | | 단위당 판매가격 | ￦40 | ￦7 | |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5 | ￦2 | | 단위당 기타 변동제조원가 | (단위당 1시간, 시간당 ￦10) ￦10 | (단위당 0.2시간, 시간당 ￦10) ￦2 | | 연간 외부수요량 | 20,000단위 | 30,000단위 | | <주> 상기 표에서 시간은 기계시간을 의미함 | | |   사업부A의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200,000이고, 연간 이용 가능한 기계시간은 25,000시간이다.  사업부B는 제품Q를 생산한다. 제품Q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외부업체로부터 특수부품S 1단위를 단위당 ￦40에 구매해야 한다. 제품Q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항목 | | 제품Q | | 단위당 판매가격 | | ￦100 | |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특수부품S | ￦40 | | 일반부품G | ￦10 | | 단위당 기타 변동제조원가 | | ￦20 | | 연간 외부수요량 | | 3,000단위 |   사업부B의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30,000이다. 사업부B는 외부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 ㈜대한의 생산기술부서는 제품Q를 생산하기 위해 특수부품S 1단위 대신에 제품X 1단위를 투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품 교체가 제품Q의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일반부품G의 원가, 단위당 기타 변동제조원가, 외부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고하였다. ㈜대한은 생산기술부서의 보고를 토대로 특수부품S를 사업부A의 제품X로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47.**특수부품S를 사업부A의 제품X로 교체할 경우, 회사전체의 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30,000 증가 | ② | ￦30,000 감소 | ③ | ￦45,000 증가 |
| ④ | ￦45,000 감소 | ⑤ | ￦50,000 증가 |  |  |

**48.**특수부품S를 사업부A의 제품X로 교체할 경우, 사업부A가 현재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사업부B에 제시할 수 있는 제품X의 단위당 최소판매가격은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18 | ② | ￦20 | ③ | ￦24 |
| ④ | ￦27 | ⑤ | ￦30 |  |  |

**49.**㈜대한은 연속된 공정 A와 B를 거쳐서 완제품을 생산한다. 완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50이다. 직접재료원가 이외의 운영원가는 모두 고정원가로 간주한다. 20x1년에 공정별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항목 | 공정A | 공정B |
| 시간당 생산능력 | 15단위 | 10단위 |
| 연간 이용가능시간 | 2,000시간 | 2,000시간 |
| 연간 생산량 | 20,000단위 | 20,000단위 |
|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10 | ￦10 |
| 연간 고정운영원가 | ￦120,000 | ￦140,000 |

㈜대한은 공정B의 종료단계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당기 중에 공정B에서 불량품 100단위가 생산되었다면, 불량품 100단위로 인해 영업이익은 얼마나 감소하는가? 단, ㈜대한의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으며, 불량품은 전량 폐기된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2,000 | ② | ￦2,500 | ③ | ￦3,000 |
| ④ | ￦4,000 | ⑤ | ￦5,000 |  |  |

**50.**㈜대한은 단일제품을 생산하며 20x1년의 판매가격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항목 | 단위당 금액 |
| 판매가격 | ￦50 |
| 변동제조원가 | 20 |
| 변동판매비 | 5 |

고정제조원가와 고정판매비는 각각 ￦20,000과 ￦10,000이다. ㈜대한의 경영자는 판매촉진을 위해 인터넷 광고를 하려고 한다. 인터넷 광고물 제작에는 ￦5,000의 고정판매비가 추가로 지출된다. 인터넷 광고를 하지 않을 경우 판매량은 1,200단위와 1,800단위 사이에서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이루고, 인터넷 광고를 하면 판매량은 1,500단위와 2,000단위 사이에서 균등하게 분포한다. ㈜대한이 인터넷 광고를 함으로써 기대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0 | ② | ￦1,250 증가 | ③ | ￦1,250 감소 |
| ④ | ￦2,250 증가 | ⑤ | ￦2,250 감소 |  |  |

|  |
| --- |
|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

**-끝-**